

제9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4. 1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4월 18일(월) 11:18~11:40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개회를 선언함.

1)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68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69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함.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어야만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되는 제재대상자인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고, 이 건 □□□□□(주), ▢▢▢▢▢(주)이 제재대상자인 주선인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었음. 다수의 위원님들은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즉, 공시의무 위반의 제재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주셨음. 일부의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조건 등을 정하는 관여는 없었으므로 제재대상자로서의 주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음.

○ (위원) 오늘 우리는 과징금 부과대상 주선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2호에 주선인

이 2인 이상인 경우가 나오는데, 과징금 부과대상 주선인은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주)이 유일한 판매사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 (보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2호는 2인 이상의 주선인이 있을 경우 주선인에는 각각 모두 다 해당하지만 2인 이상의 주선인 중에 발행조건을 정한 주선인이 따로 있고, 수동적으로 따라간 주선인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조건을 정한 주선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조항임.

○ (위원) 금감원은 펀드판매사는 주선인이고 발행조건에 협의를 했든 안 했든 펀드판매사는 어차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선인으로 봐서 향후에 이런 증권신고서가 발행이 안 되면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인지?

- (보고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임.

○ (위원) 저희가 오늘 결정 내리는 대로 그냥 펀드판매사는 모두 다 주선인은 아니고 발행조건에 관여가 된 정도를 주선인이라고 보고 향후 감독을 진행할 때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 (보고자) 이 주선행위는 펀드판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공모나 사적행위에도 발생을 함. 그런데 지금 현재 발행조건을 결정을 했든 안 했든 2인 이상의 주선인이 있을 때, 주식, 사채의 경우에는 주선인의 지위를 둘 다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때는 발행조건을 결정하는 주선인에 대해서만 조치를 한다는 것이고, 펀드판매의 경우에는 발행조건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주선인 자체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똑같은 주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요건이 펀드판매냐 아니면 주식이나, 사채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위원) §§§§§§§§ 사건 1심 판결은 ‘발행인을 위하여’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닌 것이고, 증권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 주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사안임. 같은 판결의 항소심에 보면 이렇게 법을 개정한 취지는 주선인에게도 인수인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임. 인수인에 준하는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인수인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운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음. 그래서 주선인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는지도 ‘발행인을 위하여’라는 조문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영역이 아닌가함.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 발행인을 위한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주선인 중에서 발행조건 결정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배상책임도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임. 그래서 주선인의 범위를 ‘발행인을 위하여’의 문언해석과 관련해서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설령 주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다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보임. 본 건의 경우에는 단일 판매 유통채널로서 금감원에

서 조사한 결과 발행조건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과징금 부과(안)에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음.

- (참여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자로서의 주선인임. 그러므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를 해석할 때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규정은 우리가 감안하고 꼭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임. 특히나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어떤 모집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임. 만약 기존 금감원 의견대로라고 한다면 이 조건 등을 정하지 않은 주선인, 판매사들조차도 전부 다 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 논리의 귀착에 이르게 되며, 법규정과도 일치하지 않게 됨.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토의견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함.
- (위원) □□□□□(주)과 ▣▣▣▣▣(주)이 유일한 판매 금융기관으로서 조건 등을 정하는 작은 행위라도 있었음을 금감원에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함.
- (보고자) 일단, 직접적인 물증으로는 □□□□□(주)과 운용사 그리고 ▣▣▣▣▣(주)과 운용사가 체결한 판매계약서가 있으며, 판매계약서의 하위협약서로 위탁업무세부협약서라는 계약서류가 있음. 위탁업무세부협약서라는 계약서류에는 집합

투자증권의 종목과 판매한도는 운용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문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 조항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판매한도는 쉽게 말씀드리어서 모집금액으로 해석을 하시면 됨. 어느 만큼의 자금을 모집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자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발행조건을 정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임. 그리고 두 번째 집합투자증권의 종목이라는 것은 운용사가 초기에 제시했던 판매수수료나 아니면 투자구조나 모집금액 등을 다 통틀어서 판매회사가 동의할 수 없다면 자기는 이 펀드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택권이 있는 조항임. 특히, 본 것처럼 ◻◻◻◻(주)이나 ◻◻◻◻(주)이 위반대상이 되는 펀드의 유일한 판매회사라는 얘기는 만약 ◻◻◻◻(주)이 해당되는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일 자체가 없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공모규제 위반 논란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그런 점을 다 고려해 본다면 판매계약서나 유일한 판매금융기관이라는 사정이 단순하게 판매회사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행조건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위원장) 위원님들, 이 두 건 모두 해당 판매사가 발행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여는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인지?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8호, 제69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선인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번 조치안의 내용을 보면 펀드판매회사인 ○○○○○(주), △△△△△(주)은 해당 펀드의 모집기간, 판매수수료, 보수 등의 조건을 발행인과 협의하여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제5호의 주선인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1시 40분 폐회)